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5708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녕
담당변호사 강주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8. 1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1. 5. 2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1. 10. 21. 접수 제1200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D은 C에게 가) 2012. 7. 13. 500만 원을 대출기간 12개월, 지연배상금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고, 나) 2011. 12. 26. 1,9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지연배상금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주식회사 D은 2014. 3. 19. E 주식회사에, E 주식회사는 2015. 5. 18. F 유한회사에, F 유한회사는 2019. 10. 16. 원고에게 순차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양도인들은 각 채권양도 당시 채권양도사실을 C에 각 통지하였다.

2) 주식회사 G은 2011. 10. 11. C에게 5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지연배상금율을 연 37.5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12. 10. 5.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H 주식회사에 위 계약을 이전하였다.

H 주식회사는 2014. 5. 29. 위 대여금채권을 E 주식회사에, E 주식회사는 2015. 5. 18. F 유한회사에, F 유한회사는 2019. 10. 16. 원고에게 순차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양도인들은 각 채권양도 당시 채권양도사실을 C에 각 통지하였다.

3) F 유한회사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55274호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16. 6. 29. ‘C은 F 유한회사에 40,487,366원 및 그 중 27,269,540원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20. 11. 3. F 유한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위 판결에 대하여 C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이 부여되었다.

나. I의 사망, 상속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1) C의 부(父)인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는데, 2021. 5.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망인의 자녀들인 J, K, L, C이 있는데, 피고와 C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5. 2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2021.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성립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법정상속분인 2/11 지분은 C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인데, 이를 포기하고 이 사건 분할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모두 이전해 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위분할협약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C이 1990년경부터 사업을 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를 받았고, 2004년 초에는 망인이 건물을 매각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4억 원을 증여받았는바, 이러한 C의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할협약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릇,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약을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건대, 망인이 1990년대 초부터 2004년 초까지 C에게 4억 원 이상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약 당시 C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와 C의 관계,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이루어진 시기와 내용, C의 재산상태와 채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2호의 기재 및 영상만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망인이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피고가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실제 소유자로서 배우자인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위 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재산의 반환 수단에 불과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2/11지분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2/11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윤희

별 지 목 록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대 116㎡

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로명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벽돌조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지붕2층 주택

1층 (벽돌조) 55.37㎡

2층 (벽돌조) 25.72㎡

2층 (시멘트벽돌조) 13.39㎡

